# 제 안 요 청 서 (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)

2022. 12.

국 토 교 통 부 (주거복지정책과)

# < 목 차 >

Ι.	과업개요	1
п.	참가자격 및 계약방법	1
ш.	주요 과업내용	2
IV.	예정공정표	4
V.	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	6
VI.	예정공정표	9
VII.	보안대책	10
VII.	제안서 작성 및 제출	12
IX.	업체 선정 방법	14
V.	평가방법 및 기준	17

_	3	_
---	---	---

#### I. 과업개요

- 1. 추진배경 및 목적
- □ 주거복지센터 설치·운영 매뉴얼 마련 필요
  - **주거복지센터**는 지자체·공공기관·민간 등에서 운영중이며 **지역** 및 기관의 특성에 맞게 주거복지 업무수행 중
  - 주거복지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·조직·예산,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등 마련할 필요
  - ⇒ 이에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
- 2. 예 산 : 60백만원(부가세 포함)
- 3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6개월
- 4. 수행기관 선정방식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- Ⅱ.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

#### 1. 참가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ㅇ 동법시행령 제12조(경쟁 입찰의 참가자격)에 의한 유자격자
  - ※ 전문성 있는 업체(기관)가 공동수급체(공동이행)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"공동계약운용요령"에 의함

#### 2. 계약방법

o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에 의한 "협상에 의한 계약"

### Ⅲ. 주요 과업내용

- □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
  - o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의미·필요성
    -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정의 및 목표
    - 주거복지정책에서 전달체계의 중요성
  - o 주거복지 **전달체계 원칙과 주거복지센터**의 역할
    - 주거복지 전달체계 원칙(구성, 운영) 기준 설정
    - 주거복지센터 역할 확대 필요성 및 전망

#### □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진단

- o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법규·제도 등 운영환경 분석
  - 주거복지센터의 정의, 법적 근거, 기본업무
  - 주거복지센터와 LH마이홈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의 역할
  - 주거복지 전달체계 상의 주거복지센터의 위상 및 역할 분석
- o 전국 주거복지센터 **운영현황 분석** 
  - 주거복지센터 설치 현황과 운영 주체·업무범위에 따른 유형화
  - 주거복지센터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
- o 주거복지센터 **운영의 한계** 및 개선 필요성
- □ 주거복지센터 전국화 비젼 설정 및 운영체계 구축 방향
  - o 전국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조직 설계 및 업무 수행체계
    - 중앙-광역·권역-기초 등 공간 위계에 따른 조직구성 제안
    - 주거복지센터와 유사한 국내 복지 전달체계 사례 비교·분석

- ㅇ 공간적 위계 등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직무 설계 및 표준 수립
  - 업무 범위, 인력 운영,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안 제안
  - 상담·사례관리 및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
- □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성 및 매뉴얼 수립 방안
  - 0 주거복지센터 업무범위 설정
    - 지역특성·운영주체별 조직구성 및 업무범위, 재원 조달 방식 설정
    - 표준모델 등을 바탕으로 한 주거복지센터 **매뉴얼 수립**
  - ㅇ 지역자원 연계파악을 통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주체별 협력 방안
- □ 주거복지센터 관련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
  - 0 주거복지센터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방안 마련
  -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
  - 주거복지센터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표준안 제안
  - o 주거복지센터 확산을 위한 **중장기 전략 제시**
  - 주거복지센터 효과적 확대를 위한 정부·지자체 등 역할 설정
  -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설치 유도 등 단계적 설치 확대 방안 제시
  - LH 마이홈센터,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등과의 역할 보완 방안

## Ⅳ. 과업수행 지침

#### 1. 일반지침

- 1)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,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**착수계**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,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.
- 6)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- 7)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,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- 8)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한다.
- 9)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해야 하며,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10) 과업수행자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 액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2. 과업보고

- 1) 착수보고: 계약 후 **14일 이내**에 세부연구항목, 연구수행방법, 추진일 정계획(예정공정표 포함),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 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.
- 2) 중간보고: 과업의 중간보고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고한다.
- 3) 최종보고: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20일 전 보고한다.
- 4) 월별보고: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내용,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
- 5) 수시보고: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, 수 시로 보고하도록 한다.

#### 3. 세부과업지침

- 1) 용어의 해석
  - o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, 발주청과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2)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
  - o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, 발 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과업수행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 변경할 수 있으며,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

해당 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3)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

-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, 발주청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발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해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#### 4) 자문회의

- o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하고,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보완 할 수 있다.
- o 자문회의 개최시기(일정)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5) 성과품 소유

- o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  - \*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(계약예규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를 준용한다.
-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(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관계 등)을 고려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#### 6)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

-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7)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
  - o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,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

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8)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,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  -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 이 없다고 판단될 때
  -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
  -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

#### 9) 기타사항

-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청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, 기타 행정기관 등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 토하여 반영한다.
- o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,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 도록 한다.
- 사업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·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## V.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

#### 1. 일반사항

- 1)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20일 전에 최종보고서(안)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.
- 3)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# 2.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

#### 1) 보고서 작성

- o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o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#### 2) 과업성과품의 제출

구 분	제출 시기	제출수량	비고
착수보고서	계약 후 14일 이내	20부	과업수행계획 포함
중간보고서	중간보고서 발주처 협의		
최종보고서(안)	최종보고서(안) 준공일 20일전		
최종보고서	준공검사원 제출 시	90부	최종보고서(CD포함)

<sup>※</sup>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VI. 예정공정표

과업기간(월) 과업내용	1	2	3	4	5	6
□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의의와 원칙						
ㅇ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의미·필요성						
ㅇ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정의 및 목 표						
o 주거복지 정책에서 전달체계의 중요 성						
□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진단						
<ul><li>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법규·제도</li><li>등 운영환경 분석</li></ul>						
ㅇ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분석						
ㅇ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한계 및 개선 필요성						
□ 주거복지센터 전국화 비젼 설졍 및 운영체계 구축 방향						
<ul><li>전국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조직 설계 및 업무 수행체계</li></ul>						
<ul><li>공간적 위계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직무 설계 및 표준 수립</li></ul>						
□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성 및 매뉴얼 수립						
<ul><li>주거복지 업무범위 설정, 표준모델 구성, 매뉴얼 수립</li></ul>						
<ul><li>지역자원 연계파악을 통한 주거복</li><li>지서비스 지원 주체별 협력방안</li></ul>						
□ 주거복지센터 관련 제도 개선 방안						
<ul><li>주거복지센터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방안마련</li></ul>						
보고시기	↑ 착수 보고		↑ 중간 보고			↑ 최종 보고

## Ⅶ. 보안대책

- 1)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"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(국 토교통부 훈령 제906호, ´17.7.13)"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 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,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 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정규 직원 외의 참여는 제한한다.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·부 보안책임자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3)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 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량 외 추 가 발행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4)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,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5)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.
- 6)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 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 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7)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,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
- 8)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,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·관리하여야 한다.
- 9)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해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,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, 폐지 등의 자료는 정·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·소각하여야 한다.
- 10)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 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여야 한다.
- 11)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12)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13)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,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(삭제)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.
- 14)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"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## Ⅷ. 제안서 작성 및 제출

#### 1. 작성요령

- ㅇ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
- 제안서는 A4용지 3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
- 용역 수행실적, 참여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

#### 2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o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
- o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
-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,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(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)

## 3. 제안서 제출

가. 제출기간: 입찰공고문에 따름

나. 제출방법: 온라인(e-발주시스템) 제출

다.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

○ 열람·문의: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(044-201-4868)

마. 제출서류: 입찰공고문에 따름

#### IX. 업체선정방법

#### 1. 선정방식 및 절차

- 가. 선정방식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- ㅇ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
  -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
- ㅇ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
 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(계약예규 제538호, 2020.12.24.)
- o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
  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
  - \*\*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

#### 나. 선정절차

- (1)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  - ㅇ 평가비율 : 기술평가(80%), 가격평가(20%)
  - ㅇ 종합평가점수 = 기술 평가점수 + 입찰가격 평가점수

#### (2) 기술평가

이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

#### (3) 가격평가

-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
-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

#### (4)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-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
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

#### 다. 보안준수

-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,
- o 제안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(단, 심의평가의 경우는 예외)

#### 라. 제안서의 효력

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(업체)의 제안서는 제안 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

#### 마.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ㅇ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

- o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,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
-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함
-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,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
## X. 평가방법 및 기준

## 1. 제안서(기술)평가

### 가. 평가항목 및 배점

	평가요소	배점	평가요소	평가 방법	비고
1	재무구조· 경영상태	5	<ul><li>자산, 자본, 부채비율 등(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 부설연구소,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5점 부여)</li></ul>	계량 평가	주1)
2		10	·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건수 · 참여 연구인력(석, 박사 등)의 보유현황	"	주2)
3	인력·조직· 관리기술	5	<ul> <li>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(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)</li> </ul>	"	주3)
4		20	° 과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°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	비계량 평 가	<b>주4)</b> (5,4,3) (2,1)
5	기술·지식 능력	30	<ul><li>연구수행범위 설정의 적정성</li><li>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</li><li>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성과물 활용</li><li>연구성과 도출 방향</li></ul>	"	543 21
6	과업수행계획	30	<ul><li>연구수행체계의 합리성</li><li>과업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</li><li>성과도출 결과의 적정성</li></ul>	"	543 21
	계				

### 주1) 계량평가(5)

- 재무구조·경영상태(5)

구 분			t	배 점		
·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	(2.5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·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(자기자본/총자산)/기준비율	(2.5)	2.5	2.0	1.5	1.0	0.5
·최근년도유동비율	(O E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(유동자산/유동부채)/기준비율	(2.5)	2.5	2.0	1.5	1.0	0.5

※ 기관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기준이며, 기준비율은 입찰참여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함(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이라도 '21년 기준이 없을 경우 '20년 예산기준으로 평가)

#### 주2) 계량평가(10)

- 발표 눈문 건수(5)

구 분	10건 초과	7 ~ 10건	3 ~ 6건	3건 미만	
 배 점	5	4	3	2	

- ※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주택·건축 관련분야 논문발표 건수
-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(5)

구 분	구 분 4인 이상		2인 이하	
 배 점	5	3	1	

※ 주택 및 건축 등 관련분야 전공 석사·박사급 참여 연구인력 수

#### 주3) 계량평가(5)

- 징계회수 : 0회(5), 1회(3), 2회 이상(0)

#### 주4) 비계량평가(80)

- 용역수행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배분하여 합산평가
  - 1. 매우우수 : ⑤ (100%) / 2. 우수 : ④ (90%) / 3. 보통 : ③ (80%) / 4. 다소미흡 : ② (70%) / 5. 미흡 : ① (60%)

#### 나. 평가점수 산정

○ 점수 : 기술능력평가득점 × 80%

#### 2. 입찰가격평가

○ 입찰가격 평가 일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하되, 개찰 장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로 한다.

## 제안관련 서식일람

- 1. 과업제안서(표지, 원본)
- 2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- 3.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
- 4. 연구진 이력사항(※학교 작성금지)
- 5. 용역(연구) 수행실적
- 6. 서약서

_	

## 과 업 제 안 서

용역명 :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및 매뉴얼 연구

업체명: (인)

##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

1. 회사(기관)명				2. 대	표 자	
3. 용역등록 분야						
4. 주 소						
5. 대표 전화번호						
6. 설립연도			년	월	일	
7. 주 요 연 혁						
8. 예 산 규 모 (최근 3년간 자산, 자본, 부채 등 재무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)	구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매출액	2019년	202	20년	2021년	(단위 : 백만원) 비고
9. 상시 종업원수						
10.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						

##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 현황

분 야	성명	생년월일	직위	주요경력(관련분야)	학위 또는 자격사항

주) 본 과업관련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.

## 연구진 이력사항

성 명		소 속		직 책		연 령	세
본 용역 참여임무				해당분여	야 경력	년	월
참여	임무			학위 또는	자격사항		
			주 요	경 력			
용역명(	논문명)	참여 (년월 ~	기간 ~ 년월)	담당	업무	발주처	비고

- 주) 1.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.
  - 2.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

## 용역 (연구) 수행실적

건 명	개 요	수주금액	발주처	계약일	착수일	준공일	비고

- 주) 1.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한 관련연구 논문 및 프로젝트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(학위연구논문 제외)
  - 2.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
  - 3.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
  - 4.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

## 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

- 1.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.
- 2.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,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

년 월 일

소속 :

직위:

성명: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##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

- 1. 과업제안서 (양식 1 활용)
- 2. 제안서 내용 (A4용지)
- 3. 제안업체(기관) 일반현황 (양식 3 활용)
- 4.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(양식 4 활용)
- 5. 연구진 이력사항 (양식 5 활용)
- 6. 첨부자료
  - · 각종 증빙자료 (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)
  -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